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장철민 · 채현일 · 김영환
김한규 · 정준호 · 이재관
박 정 · 박용갑 · 조승래
허 영 · 홍기원 · 김교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프로스포츠 압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압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

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를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의2제1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51조(몰수·추징) ① (생략) ② <u>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u>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생략)	지급)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의2제1호에</u>-----. ③ (현행과 같음)
---	---